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기술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3. 비전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후면에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리며, 경우에 따라 등기우편 요금은 청구자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4. 기술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비전자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